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일반사단법인 CiP협회의 업무협약서

대한민국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일본국 CiP협회 양자는 CKL기업지원센터와 CiP협회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양국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자 간 문화콘텐츠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의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
2. 양국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정보 및 양 기관 운영 프로그램 공유
3. 양자 합의 조건을 바탕으로 양국 진출기업을 위한 공간 상호 제공 및 보유 인프라 연계활용
4. 공동 마케팅 및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
5. 양국 내 스타트업 조기정착과 육성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지원을 위한 인력 운영

제3조(성실히행) 양자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변경한다.

제5조(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3월 15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강만석

강만석



일반사단법인 CiP협회
이사장 나카무라 이치야

中村伊知哉